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8
----------	-----

발의연월일: 2012년 10월 24일

발 의 자: 권칠승·조성욱·송영만·

김주성·양근서·이재준 의원

찬 성 자 김현삼 의원 등 9명

1. 개정이유

- 경기도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로 인증함으로써 생활 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항)
- 나.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다.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기준, 절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함(안 제21조의2)
- 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제1항)

3. 개정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현행) ----- [별첨]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에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녹지”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말한다.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13조 중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산림보호법」 제13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의2(시민정원사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 중에 “조경사업 등에”를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로 하고,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를 “공원녹지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서 설치된 것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된 것을 말한다. 2.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말한다. 2. ~ 14. (현행과 같음) 1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13조(보호수 지정)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수 지정) -----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제15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다.
<u><신설></u>	제21조의2(시민정원사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자문위원회) ① ----- ---<u>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u> ----- -----<u>공원녹지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산림보호법」

-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소관부서 :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녹지담당

(제정) 2004-06-14 조례 제 3341호
(일부개정) 2007-06-04 조례 제 3618호
(전부개정) 2009-03-12 조례 제 3870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서 설치된 것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된 것을 말한다.
2. “녹화”란 산림, 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녹화”란 도시지역에 나무·잔디·꽃·지피식물(이하 “식생”이라 한다), 물 또는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공간에 식생을 심거나 가꾸는 것을 말한다.
4.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광역녹지축”이란 중심녹지축 및 주녹지축과 경계녹지축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녹지를 말한다.
 - 나. “중심녹지축”이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녹지를 말한다.
 - 다. “주녹지축”이란 도의 행정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녹지를 말한다.
 - 라. “경계녹지축”이란 휴전선 지역과 서해안 수변지역의 녹지를 말한다.
 - 마. “부녹지축”이란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한 녹지를 말한다.
5.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6. “조경계획”이란 관리청이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등 주민의 보건휴양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및 민간 분야의 조경사업을 포함한다.
7.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 가.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을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는 것과 기존의 식물
 - 나. 휴게시설,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과 설치된 각종 시설물
 - 다. 그 밖의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원석, 조각물 등 각종 인공적인 시설물과 조경계획 구역 내의 기존의 돌, 나무, 인공시설물 중 경관보존을 목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시설물
8. “보호수”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 이 경우 녹지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9. “보호수 공원”이란 보호수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군의 가로수 조례 등 관계 법령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원, 녹지대, 조경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1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14.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도의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시책을 통하여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주민의 제안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유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축 설정)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 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녹지축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설정한 녹지축을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거나 정비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설정된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시책을 통하여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
2.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제시
3. 규칙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녹지축을 보전한 후 부지를 형성
4.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8조(가로수)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 및 질의 증진방향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등

③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제초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넘어진 나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바로세우기
4.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물 또는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또는 보식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서 관리하는 대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조경수목을 인위적으로 잘라 버리거나 약제 등으로 고사시키는 등의 손상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행하는 관리책임자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원상회복)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받은 조경시설물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원상변경 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 관리청은 원상회복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훼손한 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목 등의 보호 및 관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수 지정)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수공원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① 관리청은 제9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경관리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를 관련 민간단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수목의 재활용) ① 택지개발·도로의 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녹지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로 인하여 제거되는 생육상태 및 임상이 양호한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관리청은 가로수, 소공원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신청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8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보상)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서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19조(녹화의 지원)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공공기관, 공동주택, 군부대 등 중점녹화가 요구되는 지역
3. 건물 또는 옥외공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시환경과 경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독지가 또는 일반시민이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활타리조성,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녹화의 장려) ① 도지사는 조경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호 및 관리운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호수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21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